

조세회피 관련 최근 EU의 대응책과 시사점

오태현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3460-1159)



차 례 ●●●

1. EU의 탈세 및 조세회피 대응 강화 배경
2. 탈세 및 조세회피 관련 EU의 대응책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2013년 5월 EU 정상회의에서는 탈세 및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간 정책마련은 물론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EU는 탈세 및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기회복은 물론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함을 강조함.
 - EU 역내 탈세규모는 1조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EU공동체 글로벌 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협력이 요구됨.
 - EU 회원국은 조세수입 확보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있으나, 회원국별 세율이 큰 차이를 나타내며 탈세 및 조세회피 유인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 ▶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2월 ‘탈세 및 조세회피 대응에 관한 실행계획’ 을 발표하고 이 계획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 (예금과세지침 개정 및 회원국간 협력) EU는 역내 회원국간 은행예금계좌정보 공유는 물론 주변국(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과의 정보교환협의를 실시
 - (VAT 관련 정책) 이론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총액과 실제 징수액 간의 차이(VAT gap)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입자납부제도의 확대적용은 물론, VAT 탈세에 대한 신속대응기제 발효절차 간소화, 정책 개선을 위한 VAT forum 운영 등이 제시
 - (조세피난처에 대한 최소한의 조세기준 도입 논의)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최소 조세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
 - (납세자번호 관리) 현재 회원국별로 제공되는 납세자번호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털(TIN on EUROPA)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EU 차원의 단일한 납세자번호를 신설
 - (자금세탁·테러자금에 대한 규제)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EU 규정의 허점을 개선
- ▶ G8, G20, OECD 등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탈세 및 조세회피에 관한 국제공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 정부도 조세징수 강화를 위해 국내정책을 재검토하고, 국제공조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EU의 탈세 및 조세회피 대응 강화 배경

- (역내요인 1: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세수확보 필요성 확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EU 회원국은 조세수입 감소 및 지출증대라는 재정상황 악화에 직면함.
 - 그리스로부터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EU 회원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에 어려움이 따름은 물론 단기간의 경기회복이 아직 요원한 상황임.
 - EU 및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에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세수입에도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표 1 참고).
 -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 로 표기)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¹⁾
 - Schneider의 연구에 따르면 EU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9.2%에 달하며, EU 집행위는 탈세규모가 1조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함.
 - 조세집행을 강화하고 탈세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누락된 세금을 확보할 경우,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추후 재정정책의 여력을 높여 경기개선에도 기여가 가능함.
 - 한편 조세제도에서 탈세와 조세회피 방지는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경제 정책 및 사회정책 개혁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조세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표 1. EU의 경제성장률 및 재정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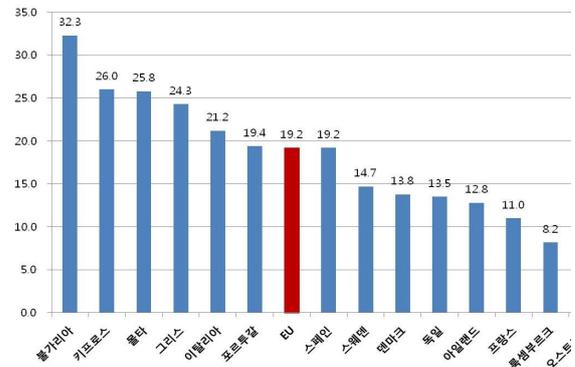
(단위: %, GDP 대비 %)

	경제성장률			재정적자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EU	1.6	-0.3	-0.1	-4.4	-4.0	-3.4
유로존	1.4	-0.6	-0.4	-4.2	-3.7	-2.9
독일	3.0	0.7	0.4	-0.8	0.2	-0.2
프랑스	1.7	0.0	-0.1	-5.3	-4.8	-3.9
영국	1.0	0.3	0.6	-7.8	-6.3	-6.8
이탈리아	0.4	-2.4	-1.3	-3.8	-3.0	-2.9
스페인	0.4	-1.4	-1.5	-9.4	-10.6	-6.5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13*.

그림 1. 지하경제 규모(2011년)

(단위: %)



자료: Schneider(2012); European Commission(2013) 재인용.

- (역내 요인 2: 세율 인상에 따른 탈세 및 조세회피 유인) EU 집행위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하향추세에 있던 소득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EU 역내 및 역외에서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²⁾
 - 뚜렷한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세율 인상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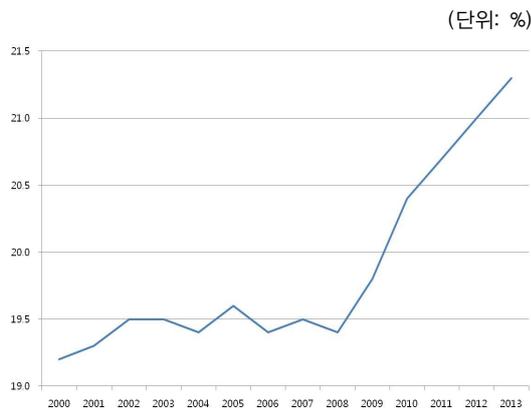
1) European Commission(2011), *Annual Growth Surveys 2012*. COM(2011) 815 final of 25 November 2011.

2) European Commission(2013), *Taxation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2012*.

되고 있으며, EU 17개 회원국에서 2008년 이후 부가세율이 인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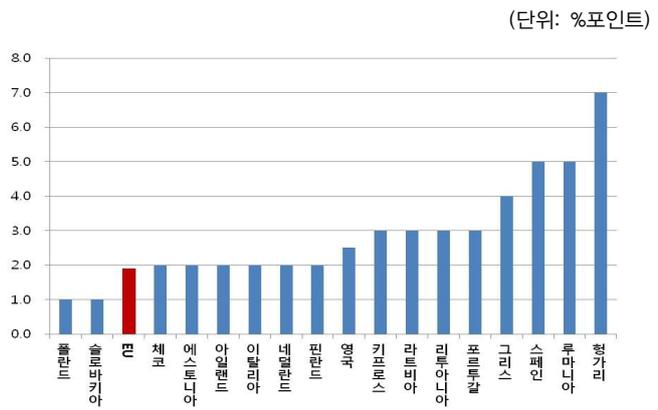
- 6개 회원국(체코,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네덜란드, 핀란드)에서는 2013년에도 전년대비 부가세율이 인상됨.
- EU는 1992년 '부가가치세율의 근접화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소 15%를 상회하는 범위에서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표준부가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³⁾

그림 2. EU의 평균 부가가치세(VAT) 세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그림 3. 2008~13년 VAT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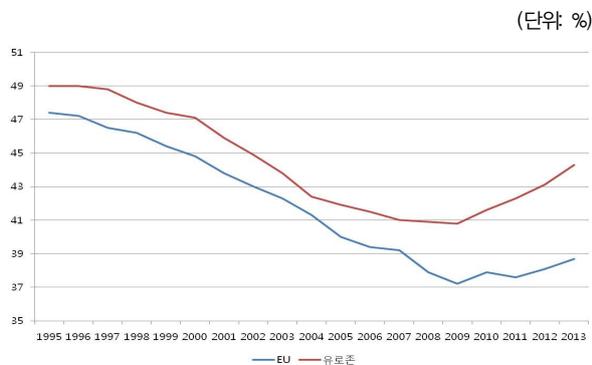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 소득세율의 경우 전적으로 회원국이 결정하고 있어 국가간 편차가 크며, 결과적으로 회원국간 조세경쟁에 따른 탈세 및 조세회피 유인이 상존함(부표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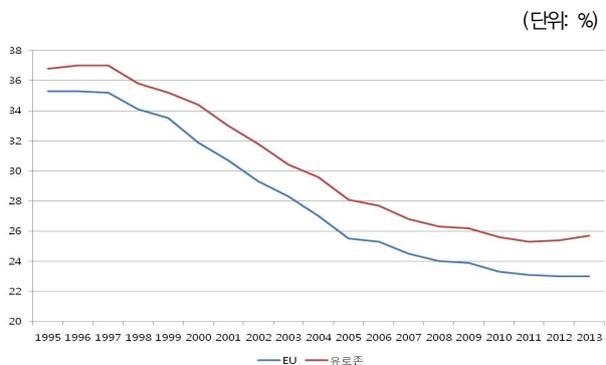
- 개인소득세율의 경우, 스웨덴이 56.6%로 가장 높은 반면, 불가리아가 10.0%로 가장 낮아 46.6%포인트의 세율 차이를 나타냄.
- 법인세율의 경우, 프랑스가 36.1%로 가장 높은 반면, 불가리아와 키프로스가 10.0%로 가장 낮아 26.1%포인트의 세율 차이를 나타냄.

그림 4. EU 및 유로존의 평균 개인소득세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그림 5. EU 및 유로존의 평균 법인세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3) Council Directive 92/77/EEC of 19 October 1992 supplementing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and amending Directive 77/388/EEC(approximation of VAT rate).

- **(역외요인: 은행비밀주의 및 조세회피 관련 비판 및 국제공조 필요성 제기)** EU는 개인 및 법인이 불법자금을 특정 국가에 예치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거두는 국가 대신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함.
- (은행비밀주의 개혁요구 확대) 2009년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대해 인정하던 'OECD 협약 제26조 정보공개에 대한 유보' 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함.⁴⁾
 - 스위스는 G20 정상회의 합의를 존중하고, OECD 회원국이 희망할 경우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할 것임을 표명함.
 - * 은행비밀주의로 유명했던 스위스는 지난 1934년 「금융거래비밀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고의는 물론 과실에 의한 비밀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을 규정함.

글상자 1. 최근 EU 내 탈세 및 조세회피 관련 사례들

1. 미국
 - 애플: 해외에서 거둔 수익 740억 달러 중 2%만 세금으로 납부했으며, 아일랜드의 낮은 세율을 활용
 - 아마존닷컴 영국지사 2012년 영국에서 50억 유로의 매출에 대해 290만 유로만 세금으로 납부
 - 구글: 2011년 영국에서 32억 파운드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로 600만 파운드만 납부
2. EU
 - 프랑스: 제롬 카위작(Jerom Cahuzac) 전 예산장관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60만 유로의 탈세금 은닉
 - 이탈리아: 철강그룹 리바의 회장인 에밀리오 리바(Emilio Riva)의 탈세금 12억 유로 압류
 - 키프로스: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둘러싸고 GDP의 100%를 초과하는 금융부문이 러시아의 부호를 대상으로 탈세의 장이 되고 있다는 비판 제기

자료: 각 언론 자료 정리.

-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글상자 1]의 사례처럼 유럽 지역에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 및 다국적기업들의 세금납부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제기됨.⁵⁾
 -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정한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49개의 조세피난처가 있으며, 이들 조세피난처는 무세국(no tax),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low tax rate), 국외소득 면세국(tax shelter) 등으로 구분됨.

4) OECD(2008), The Model Conven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5) '조세피난처(tax havens)'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면서 '조세도피처'와 같은 새로운 용어사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용어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관계로 이 글에서는 조세피난처'라는 말을 사용함.

표 2. OECD 기준 전 세계 조세피난처

카리브 및 서인도	Anguilla, Antigua and Barbuda, Aruba, Bahamas, Barbados,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Dominica, Grenada, Montserrat, Netherlands Antilles,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Grenadines, Turks and Caicos, US Virgin Islands
중앙아메리카	Belize, Costa Rica, Panama
동아시아	Hong Kong, Macau, Singapore
유럽 및 지중해	Andorra, Channel Islands(Guernsey and Jersey), Cyprus, Gibraltar, Isle of Man, Ireland, Liechtenstein, Luxembourg, Malta, Monaco, San Marino, Switzerland
인도양	Maldives, Mauritius, Seychelles
중동	Bahrain, Jordan, Lebanon
북대서양	Bermuda
태평양	Cook Islands, Marshall Islands, Samoa, Nauru, Niue, Tonga, Vanuatu
서아프리카	Liberia

자료: Gravelle(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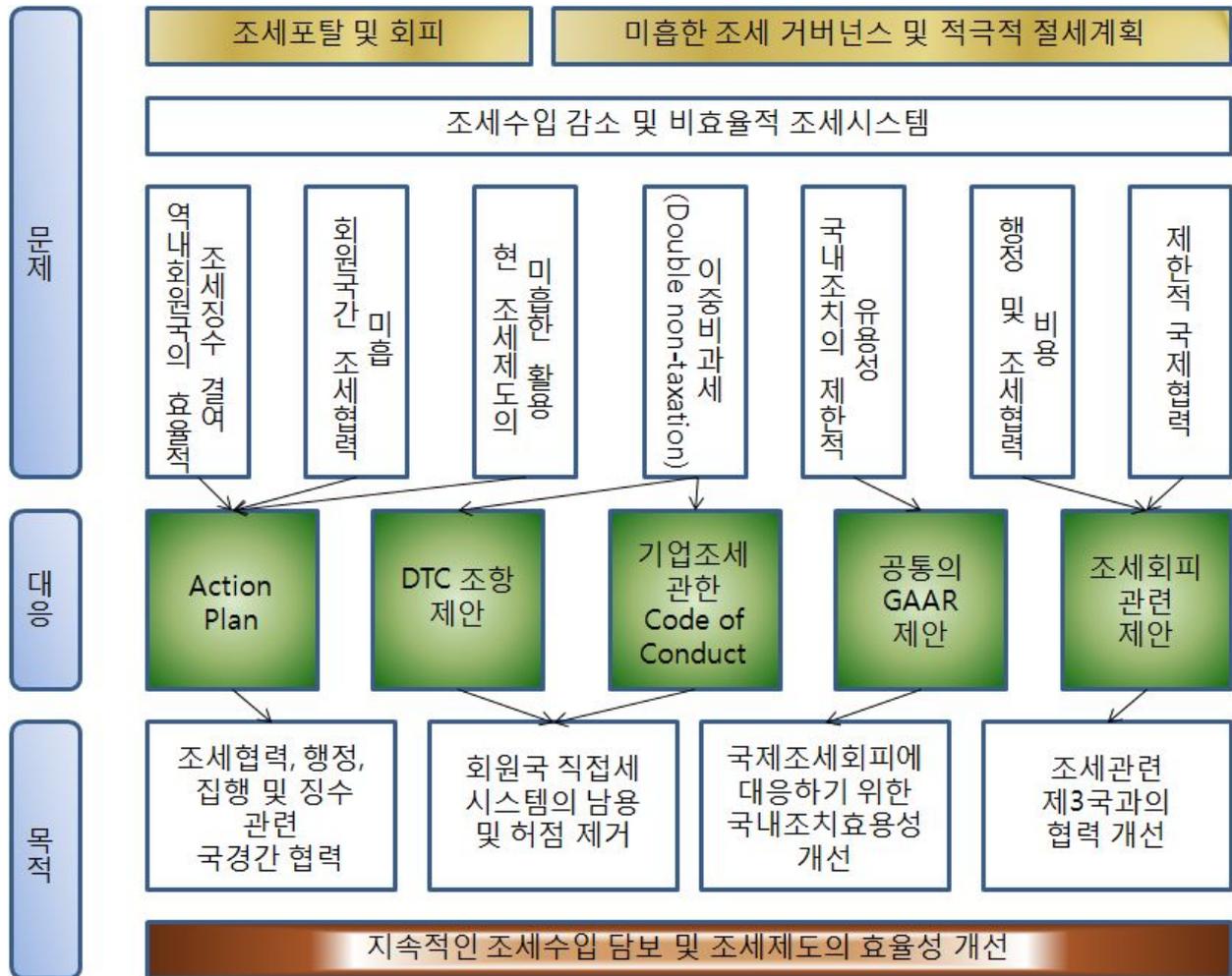
2. 탈세 및 조세회피 관련 EU의 대응책

- **(탈세 및 조세회피에 관한 실행계획)** EU 집행위는 2012년 12월 탈세 및 조세회피에 관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5월 23일 EU 정상회의에서 금융정보 공개에 대한 EU 정상들의 합의가 이루어짐⁶⁾
 - 이 실행계획은 약 30여 개의 탈세 및 조세회피 관련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시행 중인 정책 및 이의 개선, 조속히 도입해야 할 정책 및 향후 장기적으로 도입 가능한 정책으로 구분됨.
 - EU 집행위는 2012년 6월 탈세 및 조세회피에 관한 대응방안을 담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임.
 - EU 집행위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해 각각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국가간 상이하고 복잡한 조세제도로 인해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 * 탈세(Tax Evasion/Tax Fraud): 탈세는 소득누락, 허위계약, 과다비용 등을 통해 세금납부액을 불법적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함.
 - *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회피는 조세제도의 허점 및 애매한 부분을 남용해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법이 아니라 부당한 것으로 여겨짐.
 - 2013년 5월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헤르만 판롬피이 EU 상임의장은 2013년 말까지 연내 은행계좌정보자동교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은행비밀주의를 개혁하기로 합의함.
 - EU는 저축예금계좌를 시작으로 계좌정보자동교환제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임.
 -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금융정보 공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EU 정상회의 전 이를 철회하고 은행계좌정보 공유범위를 확대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연내 은행계좌정보자동교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임.
 -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5개국은 2013년 4월 탈세방지를 위한 은행계좌정보 상호교환에 이미 합의한 바 있음.

6) European Commission(2012), Action Plan to strengthen the fight against tax fraud and tax evasion.

- 반면 장-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ncker) 룩셈부르크 총리는 은행비밀주의 제거 원칙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은행계좌의 정보교환은 다른 금융 중심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언급함.

그림 6. 탈세 및 조세회피 관련 EU의 대응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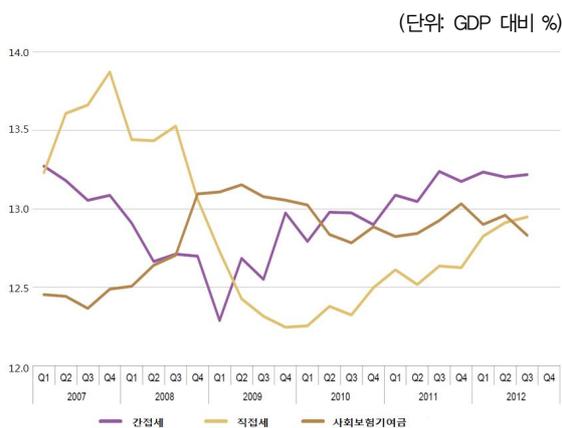
주: DTC는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Conventions), Code of Conduct는 행동규범, GAAR은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s)을 의미.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2).

- **(현 제도의 효율적 활용)** EU 집행위의 실행계획에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 개선 및 확대적용을 통해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됨.
- **(EU 예금과세지침상 정보교환 대상의 확대)** 2008년 EU는 기존 예금과세지침(Savings Taxation Directive 2005)의 허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보교환대상을 은행계좌에서 펀드, 연금, 금융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⁷⁾

7)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3/48/EC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 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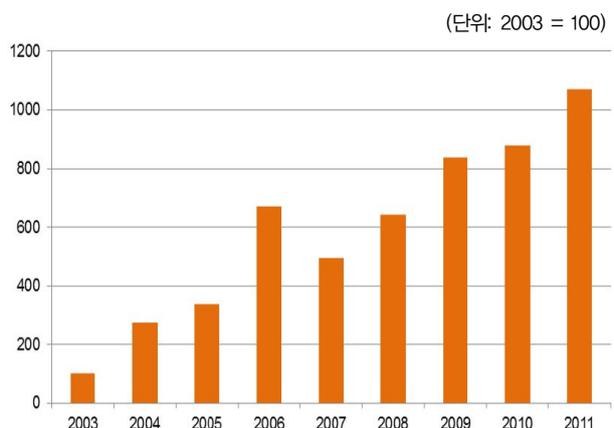
- EU 집행위는 EU 이사회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와 은행계좌정보교환(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협상을 위한 권한을 요구했으며, 2013년 5월 EU 정상회의를 통해 EU 집행위가 협상권한을 인정받음.
- **(VAT 매입자납부제도 확대 적용)** EU 집행위는 이론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총액과 실제 징수액 간의 차이(VAT gap)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Mechanism)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 매입자납부제도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가 신고·납부하고 있는 부가세를 판매자가 아닌 매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세수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도임.
 - EU 집행위는 이번 제안을 통해 현재 온실가스배출할당량(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매입자납부제도를 다른 상품 및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임.
- **(VAT 탈세에 대한 신속대응기제 절차 간소화 및 EU 차원의 VAT forum)** EU 집행위는 역내 회원국간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VAT 탈세(일명, Carousel Fraud)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7월 신속대응기제(QRM: Quick Reaction Mechanism) 및 제도개선을 위한 VAT forum 신설을 제안함.⁸⁾
 - 신속대응기제 절차간소화는 특정 경제분야에서 광범위하고 갑작스러운 VAT 탈세가 발발한 경우, 회원국 정부가 한시적으로 매입자납부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임.⁹⁾
 - * 현 EU법 체제 내에서는 동 기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8개월이 소요되는 EU 집행위의 제안 및 EU 이사회 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함.
 - EU 조세당국이 현 VAT 제도가 탈세에 취약하고 관리부담이 있다고 평가함에 따라 EU 집행위는 EU 차원에서 VAT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EU VAT Forum' 신설을 제안함.
 - * 이 포럼을 통해 조세당국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들이 VAT 수입을 담보하면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7. 부문별 조세수입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그림 8. 세금회수조치 규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8) Carousel fraud는 회전목마형 사기거래로 명명되며, 폭탄업체(missing trader)가 개입하여 면세로 구입한 재화를 과세거래로 전환한 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입한 재화를 수출하면서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방법의 탈세유형임(김완석·이중교 2010).

9)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6/112/EC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as regards a quick reaction mechanism against VAT fraud.

- **(세금회수를 위한 조세공조 강화)** EU 집행위는 누락된 세금에 대한 관리 및 회원국 조세당국간 상호조세공조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함.¹⁰⁾
 - 조세부담을 경감 또는 회피하려는 개인 및 법인의 행태가 교묘해지고 국경간 거래 증가로 인한 복잡성으로 인해 조세당국간 협력강화가 요구됨.
 - 2003년 이후 누락된 세금에 대한 회수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EU 회원국 조세당국의 협력과 이에 대한 상호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EU 집행위는 조세당국간 조세 관련 정보교환 및 지원을 통해 조세집행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함.

- **(2013년 및 2014년 도입을 추진 중인 새로운 정책 제안)** EU 집행위는 기존 제도 이외에 새로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함.
-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 최소한의 조세기준 도입 논의)** EU 집행위는 EU 역외 국가의 다소 느슨한 금융 규제 및 조세기준으로 인해 회원국의 재정수입이 침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국가가 국제적인 수준의 최소 조세기준을 마련하도록 협의할 계획임.¹¹⁾
 - EU 집행위는 개인과 법인에 최소한 또는 0%의 소득세를 적용 등 유해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국제적인 조세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함께 제시할 것임.
 - EU 집행위는 최소한의 조세기준 판단을 위해 i) 조세혜택이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 ii)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경제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혜택이 제공되는지 여부, iii) 다국적 기업의 이익발생지 결정기준이 OECD에서 합의된 기준과 상이한지 여부 등이 고려됨.
- **(모회사-자회사 관련 지침 개정)** EU 집행위는 모회사들이 세금감면 및 적극적인 절세(aggressive tax planning)를 위해 자회사가 포함된 특정 거래를 악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규제하기로 함.¹²⁾
 - EU 집행위는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특정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행태를 지적하고 관련 지침에 대한 개정을 통해 실제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납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임.
 - 특히 EU 집행위는 다국적 기업들이 어느 특정 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 를 차단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할 계획임.
- **(EU차원의 단일화 납세자번호 신설)** 국경간 거래에서 납세자 신원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EU차원의 단일화된 납세자번호(EU TIN: EU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설하여 현 조세집행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납세자번호 신설에 앞서 직접세에서 회원국간 조세행정 협력을 위해 회원국별 납세자 번호를 하나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TIN on EUROPA’ 를 신설함.

10)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No 1189/2011 of 18 Nov. 2011 laying down detailed rules in relation to certain provisions of Council Directive 2010/24/EU concerning mutual assistance for the recovery of claims relating to taxes, duties, and other measures.

11) Commission Recommendation 2012 regarding measures intended to encourage third countries to apply minimum standards of good governance in tax matters.

12) Council Directive 2011/96/EU of 30 Nov. 2011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in the case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국경간 자금거래 추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EU 역내 회원국간 자금거래 추적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자금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도록 함.
 - o EU 집행위는 2008년 이래 VAT 관련 정보를 국가간에 공유함으로써 부가세 관련 조세집행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세로 확대 적용하는 데 대한 가능성을 계획함.
 - o 동시에 EU는 회계감사프로그램(Fiscalis 2013)을 통해 IT 기술을 접목시킨 조세추적 시스템을 운영 중임.
 - (조세순응 제고) EU 회원국 내 조세 관련 One-stop-shop을 신설하여 납세자에게 조세 관련 정보를 제공, 납세자 자진신고제도 유인 개발 및 EU 표준감사제(SAF-T)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됨.
- (자금세탁·테러자금에 대한 규제 강화) EU 집행위는 불법 금융거래에 관한 EU의 규정이 많은 허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에 대한 EU 차원의 새로운 규정을 제안함.¹³⁾
- 상품거래 시 최소 7,500유로 이상의 현금거래, 도박서비스업자의 현금거래가 2,000유로 이상인 경우 은행이나 로펌은 해당 고객을 조사(customer due diligence)해야 함.
 - o 이는 1만 5,000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해 고객조사를 규정했던 기존 법규정을 강화한 것임.

3. 평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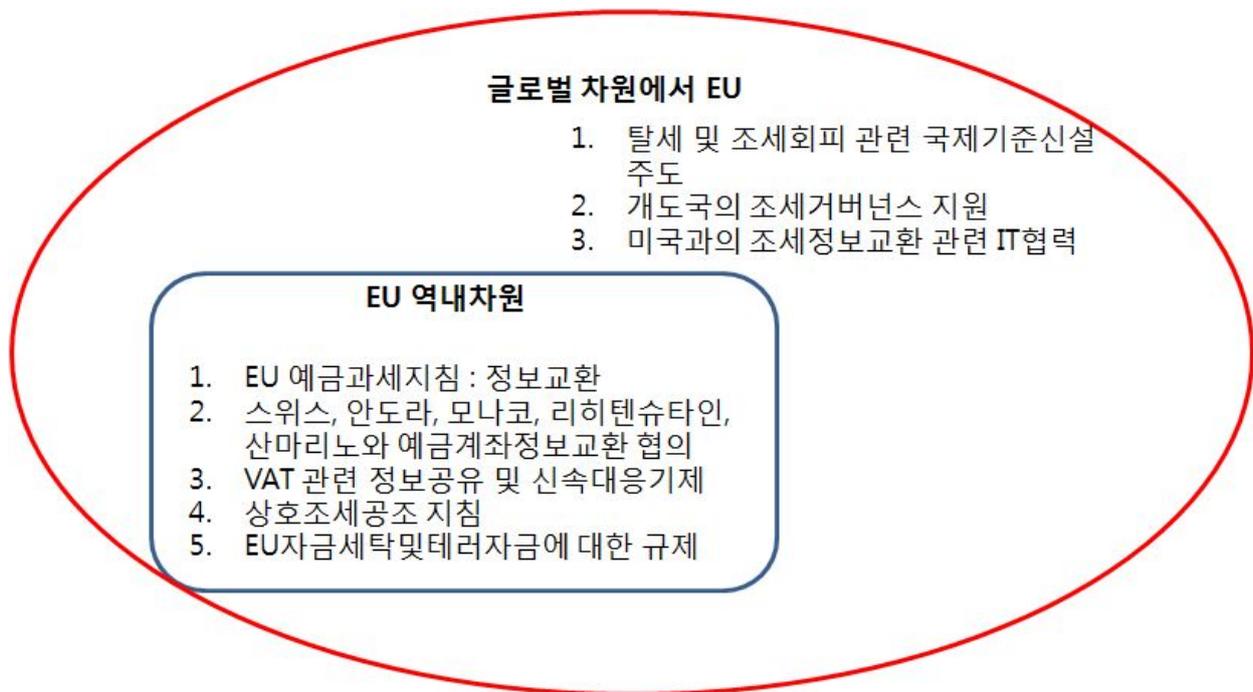
- (G8 및 G20 회의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 기대) 탈세 및 조세회피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공조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6월 17~18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담에서 국가간 거래의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o Financial Time는 조세피난처(Tax havens), 국가간 조세(Taxation), 투명성 제고(Transparency)가 이 회의의 3대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함.
 - o 독일의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G8 회의에서 탈세 및 조세회피 행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함.
 - o 또한 미국이 2010년 제정한 해외계좌조세순응법(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을 벤치마킹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 이 법은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가간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을 유도함.
 - OECD는 6월 탈세 및 조세회피에 관한 행동계획을 마련해 오는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임.
 - G20 정상회의는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¹³⁾에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나섰으며, 현재 43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함.

13) European Commission(2013),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은 국가간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및 징수협조를 위한 것으로 한국은 2012년에 동 협약에 가입함.

- **(EU 및 회원국간 조세집행 협력 강화)** 그동안 탈세 및 조세회피 관련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EU 및 EU 주요국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경제 및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 EU는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조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가 될 것으로 인식함.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정적자 수준으로 인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할 수 없던 EU 회원국들이 세수확보를 통해 재정지출의 여유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바호주((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의장은 회원국간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함.
 - 다른 한편으로는 EU 집행위가 제시한 다양한 정책 중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정책들이 있는 만큼 법 제정 및 개정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당초 기대했던 효과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EU는 개도국에 대한 조세 거버넌스 지원과 함께 국제조세표준과 관련한 EU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그림 9. 탈세 및 조세회피 대응에서 EU의 역할



자료: 저자 작성.

- **(조세징수 강화를 위한 국내정책 재검토 및 국제공조 대응책 마련)** EU 및 미국을 중심으로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 및 국제공조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현행 조세제도의 허점 (loophole)이 없는지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국제공조가 필요한 부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함. **KIEP**

부표 1. EU 회원국별 법정 개인법인 최고소득세율 및 표준부가가치세율

(단위: %)

	개인			법인			표준부가가치세율		
	2000	2012	2013	2000	2012	2013	2000	2012	2013
벨기에	60.0	53.7	53.7	40.2	34.0	34.0	21.0	21.0	21.0
불가리아	40.0	10.0	10.0	32.5	10.0	10.0	20.0	20.0	20.0
체코	32.0	15.0	22.0	31.0	19.0	19.0	22.0	20.0	21.0
덴마크	62.9	55.4	55.6	32.0	25.0	25.0	25.0	25.0	25.0
독일	53.8	47.5	47.5	51.6	29.8	29.8	16.0	19.0	19.0
에스토니아	26.0	21.0	21.0	26.0	21.0	21.0	18.0	20.0	20.0
아일랜드	44.0	41.0	41.0	24.0	12.5	12.5	21.0	23.0	23.0
그리스	45.0	49.0	46.0	40.0	20.0	26.0	18.0	23.0	23.0
스페인	48.0	52.0	52.0	35.0	30.0	30.0	16.0	18.0	21.0
프랑스	59.0	46.8	50.2	37.8	36.1	36.1	19.6	19.6	19.6
이탈리아	45.9	47.3	43.0	41.3	31.4	27.5	20.0	21.0	22.0
키프로스	40.0	38.5	38.5	29.0	10.0	10.0	10.0	17.0	18.0
라트비아	25.0	25.0	24.0	25.0	15.0	15.0	18.0	22.0	21.0
리투아니아	33.0	15.0	15.0	24.0	15.0	15.0	18.0	21.0	21.0
룩셈부르크	47.2	41.3	43.6	37.5	28.8	29.2	15.0	15.0	15.0
헝가리	44.0	20.3	16.0	19.6	20.6	20.6	25.0	27.0	27.0
몰타	35.0	35.0	35.0	35.0	35.0	35.0	15.0	18.0	18.0
네덜란드	60.0	52.0	52.0	35.0	25.0	35.0	20.0	20.0	20.0
오스트리아	50.0	50.0	50.0	34.0	25.0	25.0	22.0	23.0	23.0
폴란드	40.0	32.0	32.0	30.0	19.0	19.0	22.0	23.0	23.0
포르투갈	40.0	49.0	53.0	35.2	31.5	31.5	17.0	23.0	23.0
루마니아	40.0	16.0	16.0	25.0	16.0	16.0	19.0	24.0	24.0
슬로베니아	50.0	41.0	50.0	25.0	18.0	17.0	19.0	20.0	20.0
슬로바키아	42.0	19.0	25.0	29.0	19.0	23.0	23.0	20.0	20.0
핀란드	54.0	49.0	51.1	29.0	24.5	24.5	22.0	23.0	24.0
스웨덴	51.5	56.6	56.6	28.0	26.3	22.0	25.0	25.0	25.0
영국	40.0	50.0	45.0	30.0	24.0	23.0	17.5	20.0	20.0
EU	44.8	38.1	38.7	31.9	23.0	23.0	19.2	21.0	21.3
유로존	47.1	43.1	44.3	34.4	25.4	25.7	18.1	20.0	20.4

주: 빨간색은 최저세율, 파란색은 최고세율을 의미.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